

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117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11704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7 선고 2021가단109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경신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선고 2024. 11. 2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7. 선고 2021가단109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D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피고 D가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중 50,00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나) 원고 B에게, 피고 D가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 중 59,78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다) 원고 C에게, 피고 D가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 중 35,85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나. 1) 피고 D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5. 10. 접수 제194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 피고 D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52852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1) 제1심 공동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제1심 공동피고 E는,
가) 원고 A에게, 제1심 공동피고 E가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 중 50,00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나) 원고 B에게, 제1심 공동피고 E가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 중 59,78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다) 원고 C에게, 제1심 공동피고 E가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 중 35,850,000원의 출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일 마지막 행 ‘35,850,000원원’을 ‘35,85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6, 7행, 제11면 제11, 12, 14행, 제12면 제1행의 각 ‘R’을 모두 ‘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각주 3) 제4행 ‘X’는 ‘F’로 고친다.
-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P 토지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증인신문 기일인 2022. 4. 5. 비로소 이 사건 P 토지의 존재와 그 토지에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F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2022. 5. 2.경 이 사건 P 토지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된 사실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알았고, 2022. 5.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은 차용증 및 예금거래내역(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고 B, Y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계금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갑 제2, 3호증)이 제출되어 있으며, 제1심 증인 F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가 자신의 채무 부담을 허위로 증언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는 원고 A은 상인이고, F 역시 번호계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은 2023. 2. 8., 나머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은 2023. 6. 30.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 보기 어렵고, F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이진석, 판사 김상욱

별지